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우체국

바코드 13mm

음상변환용(외부)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

담당자

문의처

바코드 17mm

우편반송용

받는 사람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근거법률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

납부장소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안내

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에 따라 귀하(귀 법인)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
시·군·구

독촉장 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자: 납부기한:

기관번호

세목

납세연월기

과세번호

전자납부번호

세목

납부할 세액

납부할 금액

수납은행용 바코드

수납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시·군·구

독촉장 겸 영수증 (납세자용)

납세번호

과세기관

검

회계

과목

세목

연도

월

구분

읍면동

과세번호

검

납세자: 주소:

납세자번호: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
수납용

세목

지방세 (가산세 포함)

가산금

합계

납부할 금액

납부기한

까지

담당자

문의처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

발행일

년

월

일

수납일

년

월

일

전자납부번호

번호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수납인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

안 내 말 씀

-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-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증가산금이 가산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- 독촉장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읍·면·동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,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
[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]

일자	농어촌특별세		납부할 금액
	가산세(체납분)	합계	

일자	농어촌특별세		납부할 금액
	가산세(체납분)	합계	

- ◎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

-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에는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- 독촉장에 고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, 전국 은행,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-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.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①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지방세납부 등] 선택(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- ②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③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④ 위택스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(07:00 ~ 23:30)

지방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- ※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or.kr), 은행CD/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- 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

◎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.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